Ⅴ 맺음말

■ 국가정책은 국가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, 국민복리 증진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.

○ 건강생활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바람직 함.

■ 보험산업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게 국가정책 목적 달성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.

○ 보험산업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생활이 지급보험금을 줄인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 이용료 할인 등의 유인체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.

○ 기존 건강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, 전국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동 서비스 시장의 저변 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임.

○ 민영의료보험가입자는 부가적으로 보험료 상승 추세 둔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.

■ 따라서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허용하되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.

○ 개인정보가 타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허가요건 강화(자회사의 형태로만 허용) 등의 부가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.

○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여 참여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, 이는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.